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수협은행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21.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 원	○ 감봉3월 : 1명 ○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위반

「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 4 등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해 성명, 생년월일, 실명번호, 국적, 주소 및 연락처, 거래 목적,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·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는데도

은행 ○○ ○○지점 지점장 AAA은 기존 거래처인 ●●●●●●●●●●의 대표로부터 ○○○○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의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받고, 그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에 해당함에 따라 주소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, 신규 고객 확보 및 예수금 증대 등 영업점 실적 관리를 이유로 고객확인 의무 이행 가능성과 구체적인 수행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해당 중국인들에 대한

계좌(한도 제한 입출금 계좌) 개설을 해주기로 하고 지점 내 계좌개설 업무 담당자 및 지점 AML 책임자 등과 논의를 거쳐 해당 거래를 취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,

이에 따라 2021.4.21.~2021.8.5. 기간 중 ○○ ○○지점 직원 3명은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대상*인 중국인 86명에 대한 신규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서 동 중국인들이 여권과 자국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어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에도 신뢰할 만한 문서·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고객의 주소(실제 거주지)를 검증하지 않고 고객이 주장하는 주소를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.

* 고객확인 의무 수행과정에서 동 중국인(86명)을 전산시스템 상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(EDD) 대상으로 분류하고, 고객확인절차(KYC) 대상사유도 고객신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(EDD) 대상으로 기재하는 등 자체적인 위험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평가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「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
2. 「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
3. 「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규정」 제37조 및 제39조

나.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약관 제정·변경 관련 보고의무 위반

「은행법」 제52조 등에 따라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
2021.12.28.~2023.4.28. 기간 중 은행 ◇◇◇◇◇는 10건의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하면서 제정 및 변경하면서 금융감독원(장)*에게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.

* 위탁규정에 따라 약관의 제정·변경의 보고 접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

< 관련법규 >

1. 「은행법」 제52조
2.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86조의2